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.04.20.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- 아 래 -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.04.20.]부터 소유중인 실물 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당사의 실물증권(통일주권 이외)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0.04.17.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[’20.04.17.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2020년 3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(명동1가, 서울YWCA빌딩)
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(주) 대표이사 황호영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